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 캐나다 개인연금제도(RRSP)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수성** · 최원석***

〈요 약〉

캐나다는 풍족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연금플랜의 하나인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라 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RRSP는 납부할 세금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과세이연 방식의 하나로서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층 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개인연금제도의 하나인 RRSP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RSP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 말까지 개인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RRSP 제도는 설사 과세연도말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년도 세금신고 시점까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다. 본인의 과세소득을 이연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독특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IRP에서도 사후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불입 한도에 미달하여 불입하였다면 그 다음해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IRP에서도 소급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전혀 불입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하여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득이 있는 자가 배우자의 분까지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wschoi@uos.ac.kr, 교신저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의 RRSP의 사후 불입과 소급 불입, 배우자분 추가 불입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RRSP, 개인연금, 정부제공 연금플랜, 연금, 캐나다 연금, 노후 소득

I. 서 론

캐나다는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하여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다층 보장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것은 개인연금제도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개인연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연금제도를 모든 국민들이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연금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¹⁾ 이는 캐나다 정부의 과감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의지를 통해 개인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발전한 개인연금 중의 하나는 등록연금저축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라 함)라고 하는 제도이다. RRSP는 나이 들어 은퇴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저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일종이다.²⁾ 개인연금의 하나인 RRSP는 개인이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연금계좌인 RRSP에 추가 불입함으로써 과세이연을 받고 동 금액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 시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의 한 축인 개인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RRSP라고 하는 개인연금제도의 세 부담 절감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캐나다 개인연금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는 OECD 국가 중에서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개인

1)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3층(기업연금, 개인연금)에 해당된다.

2) 개인이 은퇴 후(65세) 연금수령을 위해 정부에 등록하는 연금저축제도이며, 소득이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는 연금계좌에 71세까지 저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을 통한 자발적 노후 소득 준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³⁾ 캐나다의 사적 연금 중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50%⁴⁾로서 개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비교적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된다.⁵⁾

캐나다 RRSP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개인연금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본인의 노후 소득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다. 그에 따라 연도 말까지 불입 한도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로 연금을 인출하여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된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의 소득이 70,000달러이고 개인 연금의 불입 한도가 10,000달러인 경우에 납부할 세금이 8,000달러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도 말까지 개인연금계좌에 5,000달러를 불입했다면 추가로 5,000달러를 RRSP에 추가 불입할 수 있고⁶⁾, 납부하는 세금은 3,00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70,000달러에서 10,000달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60,000달러로 감소하는 세제 혜택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캐나다 제도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단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인 RRSP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여 납부할 세금을 이연시키고, 실제로 은퇴하여 연금을 인출한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캐나다 RRSP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인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IRP는 해당 연도 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7백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그 익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익년도 공제대상이 된다. 특히, 당해연도를 넘겨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전 년도 소득 신고 시 공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연금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RRSP 계좌를 은퇴시점에 이르러 등록퇴직소득기금(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이하 'RRIF'라 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더욱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RIF는 RRSP로 불입·관리 되어진 예금을 과세이연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예금 제도로써 만 71세까지 불입·관리하던 비과세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RRSP에서 RRIF의 형태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RRSP는 만 71세가 되면 불입된 금액 전액을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퇴직소득기금(RRIF)으로 전환하여 비

3) OECD(2009)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공사연금의 총소득 대체율은 약 70%이며, 이 중에서 사적연금의 총소득 대체율은 약 31.1%로서 사적연금 우위형 국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20~40%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이 우위인 국가로는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있다.

4) OECD 2007년 기준

5) 캐나다의 인접국이면서 사적연금 우위형 국가인 미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캐나다보다 훨씬 낮은 17%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18%로서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6)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후 불입'으로 칭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은 당해 연도 말까지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연도 말까지 불입하지 못하였다면 세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 RRSP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는 근로소득이 있는 현역 시절에는 RRSP에 추가 불입하여 세부담액을 절감시키고 실제 은퇴시점에서는 연금 수령 시에 RRIF에 연금자금을 이관하여 비과세되는 세 부담 절감 및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tax return) 의무가 발생한다. 세금신고 시기가 도래하면 많은 캐나다 납세의무자들은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연금의 일종인 RRSP 계좌에 납부할 세금을 대신 RRSP 계좌에 추가 불입하여 과세이연을 받고 있다. 이처럼 RRSP의 효과는 비단 절세만을 위한 목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RSP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이연하여 주고 그 금액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불입 시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인출시점에서 과세를 한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사후 불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연금 불입 시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었다.⁷⁾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제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주로 개인연금제도가 가입자의 세 부담 절감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연금 불입액 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7백만원(9백만원)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을 뿐 공제되는 세율만 서로 차이가 있다. 게다가 전년도 불입 한도에 미달하여 불입하였어도 익년도에 추가 불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년도에 전혀 불입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소급 불입 제도를 도입하여 불입액 한도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도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⁸⁾

본 연구는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세계를 고찰한 후 제Ⅲ장에서는 캐나

7) 2019년에 법 개정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불입 한도가 7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년 개정세법에서는 한도를 더욱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기로 개정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된다.

8)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급 불입’으로 칭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와 당해연도 소득이 70,000달러라고 가정하고 양년도 개인연금 불입액 한도가 10,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전년도에 10,000달러를 불입하지 않았다면 당해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하여 20,000달러를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제도를 소급 불입이라 한다.

다의 개인연금 일종인 RRSP 제도의 세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캐나다의 RRSP와 같은 제도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도입 시의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우리나라 개인연금 세제 현황

1. 선행연구 고찰

개인연금 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주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연금제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세제 관련 연구가 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일부 있었다.

정원석 외²(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및 연금과세 체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연금보험료 공제방식 변화와 세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현행 연금소득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⁹⁾ 김수성 외¹(2020)의 연구에서도 개인연금 공제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금융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13년에 개인연금에 대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감독 기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¹⁰⁾ 또한, 김원섭 외¹(2008)의 연구에서는 연금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연금개혁 사례 중에서 개인연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인연금의 도입방안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¹¹⁾ 이순재 외¹(2009)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 측면과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서 가입금액을 증액시키는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득공제 금액 상향 조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개인연금 통합포털을 활용하는 인터넷 마케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¹²⁾

9)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

10) 김수성·정영득, 2020, 개인연금 공제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금융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1호, pp.1-41

11) 김원섭·강성호, 2008,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권 제1호, pp.261-292

12) 이순재·김현수, 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3호, pp.249-280

한편, 전승훈 외2(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을 살펴보고있다.¹³⁾ 이밖에, 심해린 외1(2020)의 연구에서는 노후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노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절세효과는 개인연금 가입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밖에, 이경희(2013)의 연구에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2008~201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자가 실제 선택한 옵션과 연금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¹⁵⁾

그리고, 전승훈 외2(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을 살펴보고있다. 연구 결과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불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노후 대비 유인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¹⁶⁾ 이밖에, 임병인 외1(2005)은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살펴보고있다. 연구 결과, 개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¹⁷⁾ 또한, 정요섭(2003)은 신·구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저금리 추세에서는 보험료 불입 시와 연금수급 시의 세율 차가 두 단계인 경우에도 구 연금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⁸⁾ 그리고 정원석 외1(2015)은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를 분석하였다.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소득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중산층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⁹⁾ 그리고, 김병권 외3(2013)의 연구에서는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고있다. 2006년 개정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가계의 저축행태에 미치

13) 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7,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1호, pp.41-72

14) 심해린·전병욱, 2020,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pp.119-151

15) 이경희, 2013,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pp.37-69

16) 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7,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1호, pp.41-72

17) 임병인·강성호, 2005,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 소득 보장 효과,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3호, pp.89-121

18) 정요섭, 2003, 신·구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pp.3-22

19) 정원석·강성호, 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pp.113-141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납부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효과성은 상당하지만, 저축을 구축하여 효율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⁰⁾

이밖에 김수성 외¹(2017)의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의 정책입안, 입법 과정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연금공단, 과세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제공하고자 하였다.²¹⁾ 이밖에 김원식 외³(2016)은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은 장기적으로 재정개선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보이며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속히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밖에 일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수성(2010)은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공적·퇴직·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퇴직연금 과세를 주요국인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금소득 과세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밖에 캐나다의 개인연금 사례 연구로 홍원구(2012)의 연구가 있는데,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²⁴⁾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개인연금제도를 통한 소득계층별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사적연금 세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며, 일부 주요국의 개인연금 세제 지원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당해 연도에 개인연금 불입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후 불입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연금 불입에 대하여 사후 불입과 소급 불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불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캐나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20)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 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pp.53-79

21) 김수성·이세우, 20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 pp.185-218

22) 김원식·김우철·김상봉·김재현, 2016,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pp.33-58

23) 김수성, 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공적·퇴직·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0-1집, pp.378-422

24) 홍원구, 201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정책 12-08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연금 세제 현황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미흡한 경우를 대비하여 3층 연금체제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제도의 일종이다. 개인연금제도는 현재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 상품이란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과 (구)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으로 구분된다. 과거 개인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수령 시에도 비과세되었다. 그러나, (구)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반면, (신)연금저축은 (구)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 시 일정 납입금액을 한도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연간 최대 18백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적립액 4백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연금저축은 IRP 불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비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비교 현황

구분		개인연금저축	(구)연금저축	(신)연금저축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 제40조의2
도입시점		1994년 6월 (’01년부터 판매중지)	2001년 1월 (현재 판매중지)	2013년 세제개편 이후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국내거주자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	국내거주자
소득 공 제	범위	연간 저축금액의 40%	연간 저축금액의 100%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	연간 72만원	연간 4백만원 (퇴직연금 추가불입 합산)	연간 4백만원 (퇴직연금 추가불입 합산)
연금수령 단계세제		비과세	연금 수령시 5.5% 원천징수 (총 연금소득 6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 수령시 3.3~5.5% 원천징수 (사적연금 12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자료 : 김용민 외2(2019) 금융상품과 세금 참고함.

반면,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 시에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판매상품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및 변액보험 등을 말한다. 세제적격 상품은 납입한 원금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10년간 해약을 하지 않고 상품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상품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13.2%를 절세할 수 있으며,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는 매년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1년에 받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율은 5.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 6.6~49.5%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반면, 중도해지로 인해 패널티를 받는 금액은 그동안 쌓였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 즉, 원금에 13.2% 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반면, 패널티 금액은 (원금+이자)×16.5%만큼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제적격 상품의 장점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는 반면, 연금 수령 시점에서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의 세율인 5.5%로 과세하게 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납입중단도 불가하다. 세제비적격 상품의 장점으로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²⁵⁾ 반면, 단점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중도 해지 시 원금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내용 이해

종류	세제적격 상품	세제비적격 상품
특징	• 매년 납입금 세액공제(○) • 비과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 10년 유지시 비과세
상품명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판매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금혜택	연간 납입액의 13.2% 공제(연 400만원 한도), 납입액×13.2%=세액공제액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25)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까지 비과세되며 중도인출과 납입중단도 가능하다.

〈표 2〉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내용 이해 (계속)

종류	세제적격 상품	세제비적격 상품
연금 소득세	연금 수령시 매년 연금소득세 발생(55세~ : 확정형 5.5%, 종신행 4.4%), (70세~ : 확정형& 종신행 4.4%), (80세~ : 확정형&종신행 3.3%) ※ 연간 지급총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 소득세율(6.6%~49.5%) 적용	연금소득세 0% 연금 수령시 : 세금 없음(비과세) (가입 후 10년 유지시)
중도 해지시	원금손해 &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액 발생, (원금+이자)×13.2%=패널티 금액	사업비로 인한 원금손해 세제혜택이 없었으므로 반환금액 발생(×)
중도인출	불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 가능	가능, 계약자 적립금 안에서 중도인출 가능

추가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세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연금 세제는 불입·운용·인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불입단계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²⁶⁾ 반면,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이연하여 급여 수령시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출단계에서는 총 수령 연금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며, 12백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소득 과세체계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우리나라 개인연금 단계별 세제 현황

구분	불입 단계	운용 단계	인출 단계
개인 연금	•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 따라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 [연금저축(세제적격)] -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부담금 합산, 년 7백만원 한도 12% 세 액 공제 [연금보험(세제비적격)] - 소득세 납부 → 공제혜택 없음	•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저축] - 중도 해지시 ‘연 금외수령’으로 간 주, 16.5% 기타소 득세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① 연금 : 연금소득과세(퇴직연 금과 합산, 년 12백만원 이 하인 경우는 3.3~ 5.5% 세 율로 분리과세) ② 일시금 : ‘연금외수령’ 간주, 기타소득세 과세 단, 세액공 제 받지 못한 부분은 비과세

자료 : 저자가 각 연금 단계별로 정리한 것임

2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III. 캐나다 개인연금제도(RRSP)와 세제지원 현황

1. 캐나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 현황

캐나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속한 국가로서,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다층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다.²⁸⁾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3층 연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층 연금체계는 정부 주도형의 제도로 운영되며, 2층 연금체계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이고, 3층 연금체계는 개인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차원의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다.²⁹⁾

먼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인 노후안정연금(OAS : Old Age Security)이 있다.³⁰⁾ OAS는 캐나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으로 매년 네 차례 분기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조정된다. OAS의 자격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 1층 연금체계로 소득 보조금을 받는 보충소득수당(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제도가 있다.³¹⁾ 이 제도는 노후안정연금(OAS) 수령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우자와 연금의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보조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밖에 배우자 수당(Allowance)이 있다.³²⁾ 보충소득수당(GIS)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사람 중에서 본인이 60세부터 64세까지인 경우 배우자 수당의 수령이 가능하다.

둘째, 2층의 연금체계로 국민연금제도(CPP : Canada Pension Plan)가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CPP에 의무가입 대상이다. 연령이 60세

27) 오병국(2011)의 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을 참조하였다.

28) OECD(2010)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970년 7.9%에서 2010년 14.1%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 인구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15~64세 전체 노동인구 중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29) 캐나다는 0층의 보충소득수당(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0) Old Age Security(OAS) 수령 금액은 캐나다 거주 연수에 따라 상이하다. 18세 이후 4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만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07달러를 받을 수 있다.

31)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는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개인소득, 결혼유무, 배우자가 연금 수령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하다. 최고금액은 매월 764.40달러이며, 연간 개인소득이 17,088달러가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32) Allowance라는 보조금은 OAS와 GIS를 수령하는 배우자가 60세~64세일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것은 개인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하다. 최고금액은 월 1,070달러에 해당한다. 배우자 생존수당은 배우자가 사망 시 소득에 따라 최고 월 1,198달러까지 지급된다. 또한, 퀘벡주 거주자는 CPP 대신 Quebec Pension(QPP)을 받을 수 있다.

에서 70세에 이르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시기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각각 상이하다.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6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감액연금’을 받게 되고, 7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증액연금’을 받게 된다.

셋째, 3층 연금체계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일종인 RRSP가 있다. RRSP는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한 65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³³⁾ 18세 이후 10년에서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지급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하다.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3층의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1층의 보충소득수당(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과 노후안정연금(Old Age Security : OAS)제도와 배우자 수당이 있다. 2층에는 국민연금제도(Canadian Pension Plan : CPP)와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가 있고, 3층에는 기업연금인 등록연금제도(Registered Pension Plan : RPP)와 개인연금인 등록연금저축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RRSP)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캐나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캐나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³⁴⁾

3층	개인연금인 등록연금저축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RRSP) 기업연금인 등록연금제도(Registered Pension Plan : RPP)
2층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캐나다국민연금제도(Canadian Pension Plan : CPP)
1층	기초연금의 일종인 노령보장제도(Old Age Security : OAS) 보충소득수당(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 배우자 수당(Allowance)

2. 캐나다 개인연금(RRSP) 제도의 이해

가. RRSP의 개요

RRSP는 195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 연령에 따라 퇴직 적립기금을 모으는 것이 주된 목

33) 개인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절세의 혜택이 있는 RRSP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RRSP는 71세까지는 RRIF(등록퇴직소득기금)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한다. RRSP는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추는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34) 캐나다 연금제도는 1층 노령보장제도(OAS, Old Age Security : 비기여방식의 거주 기준 연금제도), 2층 캐나다국민연금제도(CPP, Canada Pension Plan : 기여방식의 소득비례제도), 퀘벡연금제도(QPP, Quebec Pension Plan), 3층 등록연금제도(RPP, Registered Pension Plans), 등록연금저축제도(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로 구성되어 있다.

적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RRSP에 적립된 금액은 등록퇴직소득기금(RRIF)으로 전환될 때 소득세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캐나다 투자 계정인 인출금지연금계도(Locked-In Retirement Account, 이하 'LIRA'라고 함)와 매우 유사하다.³⁵⁾ 이는 연금을 보유하는 목적과 기능을 가진 캐나다 투자 계정에 해당된다. RRSP는 개인과 배우자 또는 그룹별로 가능하며, 캐나다의 연방 관할권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RRSP의 불입과 전환 및 인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RRSP 불입

RRSP는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정부가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대비한 저축제도의 일종으로 은퇴자금 마련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제도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1957년에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RRSP 불입 한도는 직전 연도 소득의 18%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최고 불입 한도는 2022년을 기준으로 29,21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³⁶⁾

RRSP로의 입금은 소득에 최대 18%와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불입한다. 만일 2022년 소득이 200,000달러였다면 18%인 36,000달러가 불입 한도가 아니라 29,210달러가 한도로 적용된다.³⁷⁾ 이때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세금신고 전에 불입 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통지서(Assessment)로 통보해 준다. 당해연도 4월 30일에 만료되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사용하기 위한 RRSP 구입은 당해연도 3월 1일 전까지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한도가 이월되어 익연도에는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미 사용분만큼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의 불입 한도가 8,000달러이었는데 실제로 5,000달러만 적립하였다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미 불입액 3,000달러를 이월(carry forward)하여 해당 연도의 한도보다 3,000달러를 더 예치할 수 있다. 현재 RRSP는 71세까지 예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71세가 되면 전액을 인출하거나 RRIF라고 하는 계정에 이전하여야 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 가입

35) LIRAs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및 뉴 펀들 랜드에서 입법되었다. 계좌 보유자는 만기가 되거나 요구 사항이 충족 될 때까지 은퇴 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어떤 이유로든 은퇴하기 전에 plan에 회원 자격이 종결된 등록연금계도(Retired Pension Plan, RPP)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적립된 기금을 LIRA로 이전하여야 한다. 직원이 은퇴하기 전에 사망 한 경우에 적립금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양도되며 LIRA로 이전된다. LIRA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은 기금이 인출 될 때까지 이연된다.

36) RRSP 투자한도는 매년 세금보고 후 CRA로 부터 받는 NOA(Notice of Assessment)에 차년도 RRSP 투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ra-arc.gc.ca>)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7) 연도별 최대 불입 한도는 다음과 같다. 2004년에는 14,500달러이며, 2005년에는 16,500달러, 2006년은 18,000달러, 2007년에는 19,000달러, 2008년에는 20,000달러, 2009년에는 21,000달러, 2010년에는 22,000달러, 2011년에는 22,450달러, 2012년에는 22,970달러, 2013년에는 23,820달러, 2014년에는 24,270달러, 2015년에는 24,930달러, 2016년에는 25,370달러, 2017년에는 26,010달러, 2018년에는 26,230달러, 2019년에는 26,500달러, 2020년에는 27,230달러, 2021년에는 27,830달러, 2022년에는 29,210달러의 한도로 불입할 수 있다.

기간은 7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RRSP는 예금형(Deposit Type) 또는 펀드형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진다.³⁸⁾

(2) RRSP 전환과 관리 기관 변경

RRSP는 상품의 전환이 가능하며 투자관리 기관 간 이동이 가능하다. 즉, 펀드형에서 예금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소유중인 RRSP 예금 투자 상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RRSP를 불입한 개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금관리 기관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T2033’ 양식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과없이 기존에 불입되고 관리되는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전된다.³⁹⁾ RRSP 이관 시에는 반드시 그 예금의 중도 지급불능 여부(Locked-in Requirement)를 명확히 해야 하며, 예금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불능 조건의 수락 여부를 통보해 주는 책임이 있다.

(3) RRSP의 인출

RRSP에서 인출되는 모든 자산은 과세대상으로 RRSP계정에서 자산을 찾으면 원천징수(Withholding tax)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RRSP는 만 71세가 되면 RRSP는 전액을 인출하거나 RRIF, 연금(Annuity) 중 하나로 전환되어야 한다.⁴⁰⁾ RRIF 계정에 들어 있는 자산은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없이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한 최소금액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또한, RRSP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관리된다.

나. RRSP의 종류

RRSP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RRSP와 배우자 RRSP(Spousal RRSP) 및 그룹 RRSP가 있다. 우선, 개인 RRSP는 개인 혼자의 명의로 적립하는 개인 계정이다. 둘째, 배우자 RRSP는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RRSP 계정을 개설하고 적립하는 계정이다. 이 계정의 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가 인출할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 RRSP로 예금을 하던 배우자 RRSP로 예금을 하던 자신이 한해 RRSP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다.⁴¹⁾ 셋째,

38) RRSP 예금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연방정부 세무서(CRA : 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이 된다. 저축액만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입액과 발생 이자는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39) 이관 금융기관(Transferor)은 ‘T4’ Slip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 수관 금융기관(Transferee)도 불입증명서를 서로에게 발행하지 않는다.

40) 2007년 이전까지는 69세에 전환하여야 했다. 그런데, 현재는 71세에 전환하여야 한다.

41) 예를 들어 20,000달러가 불입 한도이라면 본인이 10,000달러를 배우자가 10,000달러를 각각 불입할 수

그룹 RRSP가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주는 RRSP이다. 급여에서 자신이 정하는 일정액을 RRSP계정으로 이체시켜 준다. 개인 RRSP와 다른 점은 회사에서 직접 공제를 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RRSP를 제외한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해에 소득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개인 RRSP와는 달리 절세효과를 즉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정기예금 RRSP와 배우자 RRSP, 주택구입 계획 RRSP 및 교육비 지원 RRSP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RRSP

RRSP의 예치 기간은 통상 1년, 1.5년, 2년, 3년, 4년, 5년이며 예치 한도는 없다. 그리고 인출 시에는 분할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도해지 또한 불가능하며 이자지급은 고정금리로 지급한다. 이자지급 방법은 저축일로부터 인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수방식에 의하여 단리로 지급한다. 금리구간 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직전 구간의 이율을 적용한다. 만기 시에는 자동재예치가 되며, 예금보호를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100,000달러까지 예금보호가 된다. 본인 RRSP에 기여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에서 제외시켜 준다. 예를 들어 만일 연봉이 5만 달러인데 RRSP에 1만달러를 불입하였다면 과세소득은 4만달러가 된다. 그러므로 4만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⁴²⁾ RRSP를 통해서 주식이나 ETF 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만약, 비과세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 이하 'TFSA'라 함)나 RRSP가 아닌 보통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발생 수익에 대하여 5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 배우자 RRSP

배우자 RRSP는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 계좌를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배우자 RRSP 구입 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배우자 RRSP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인출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배우자 RRSP는 납세자가 그 배우자 명의로 RRSP를 불입할 수 있는 배우자 명의의 은퇴연금플랜을 말한다. RRSP에 불입한 자가 본인의 최대 RRSP 불입 범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해주는 상품이다. 불입 금액은 불입한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불입 금액은 71세 이후 배우자가 수급권자로서 RRSP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 RRSP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 상에서 71세 이전에 예금 인출조건을 두고 있으며, 71세 이전 인출된 금액은 인출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의 불입 금액을 주어진 조건에 따

있지만, 본인이 20,000달러, 배우자가 20,000달러를 각각 불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2) 예를 들어 연봉 5만달러는 원래 $20.5\% + 9.15\% = 29.65\%$ 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1만달러를 RRSP에 불입한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4만달러로 감소되어 그로 인한 세금이 20.05%로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을 9%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라 연금 수급권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게 된다.⁴³⁾

(3) 주택 구입 플랜 RRSP(The Home Buyers Plan RRSP)

주택 구입 플랜 RRSP는 통상적으로 주택구입플랜(The Home Buyers Plan, 이하 ‘HBP’라 함)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주택구입자로 본인의 주택 구입용도로써 자신의 RRSP와 배우자 명의의 RRSP를 기존 RRSP의 혜택을 유지한 상태로 예금을 일부 인출하여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5년 동안 주택이 없었던 경우 이 RRSP를 적극 활용하면 주택 구매 시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RRSP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은퇴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RRSP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집을 처음 살 때 (HBP—Home Buyer’s Plan)와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LLP—Lifelong Learning Plan)이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과거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35,000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할 경우에는 각각 35,000달러까지 RRSP에서 세금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 내에 다시 불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30,000달러를 HBP으로 인출하였다면 다다음 해인 2023년부터 매년 최소 2,000달러(30,000달러/15년)의 RRSP를 불입해야 한다. 불입한 RRSP를 HBP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RSP를 불입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RRSP(Spousal RRSP)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만 소득이 있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남편의 RRSP 불입한도를 이용하여 아내의 RRSP를 구입하고 세금 혜택은 남편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은 이미 RRSP가 35,000달러를 불입하였다면, 아내 명의로 RRSP를 불입하여, 주택 구매 시 각각 최대 35,000달러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⁴⁴⁾ 배우자 RRSP 본인이 적립한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교육 비용지원 RRSP(The Life long Learning Plan)

RRSP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LLP—Lifelong Learning Plan)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 비용지원 RRSP는 1998년 2월 27일부터 RRSP 예금주 본인이나 배우자와 파트너의 풀타임 학생으로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RRSP의 인출 시는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한 플랜이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과정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고, 만약 학생 본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풀타임 학생이 아니어도

43) 배우자 RRSP는 부부 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나 부부의 은퇴 준비금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4) HBP는 채무로 간주하여 2년의 상환기간을 유예한 후 13년 내에 이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교육비 용도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교육비 사용목적으로 인출가능 한도는 1년에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여러 개의 계좌에서 인출 가능하다. 즉, 여러 개의 RRSP에서 모두 인출한 총액이 1년에 최대 10,000달러이고 최장 4년간 총 인출 금액은 2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용 목적으로 인출된 총액은 무이자로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이 이루어지기 90일 이전부터 불입된 RRSP이어야만 한다.

Lifelong Learning Plan(LPP)이라고 하여 대학 학비로 연 1만달러, 최대 2만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⁴⁵⁾ 부부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득이 높은 쪽에서 소득이 낮은 쪽으로의 소득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도 해지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RRSP 특성상 은퇴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을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연금저축에 대하여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과 같다.

3. 캐나다 RRSP 세제 혜택

가. RRSP 불입과 인출의 세제 혜택

RRSP는 캐나다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합법적 감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RRSP는 캐나다 거주자의 연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절세 목적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소득수준이 높을 때 RRSP를 구입하여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득수준이 낮을 때 RRSP를 인출함으로써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RSP 공제의 내용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RSP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사전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개인만이 한도 내에서 RRSP의 구입이 가능하다. 근로 및 사업(임대 소득) 등 소득금액(Earned income)의 18%와 29,210달러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RRSP의 구입이 가능하다.⁴⁶⁾

둘째, RRSP 공제는 공제연도에 세금이 감소되지만, RRSP를 인출하는 시점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RRSP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영구적 세금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에 해당된다. 따라서 RRSP를 인출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시기인 은퇴 이후에 인출하면 절세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RSP에 적립한

45) 이 역시 채무로 간주되어 5년 차 또는 학업 종료 2년 후에는 둘 중 더 빠른 조건을 만족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46) 따라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투자소득만 있는 개인은 RRSP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RRSP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소득 종류에 따라 RRSP 세금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투자보다는 근로나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금액은 그 해의 개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⁴⁷⁾ 또한, RRSP 계좌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적립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RRSP 계좌에 10,000달러를 적립하고 매년 그에 대한 이자로 1,000달러가 발생하여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립금을 인출할 시점까지 이연되는 것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을 때 RRSP를 구입하여 과세소득을 낮추고 은퇴 이후 소득이 낮을 경우 RRSP 적립금을 인출한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⁸⁾

셋째, 배우자 RRSP를 이용하면 배우자 간 소득분산(Income Splitting)이 가능하다. 배우자 RRSP란 납세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RRSP를 가입하는 것이다. 배우자 RRSP에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은퇴 이전에 RRSP를 인출해야만 한다면 인출시점에서 본인의 소득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적을 경우 배우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 인출금액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이 높은 본인 소득에 포함될 때에 비하여 부담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금제도의 취지상 RRSP 구입 한도가 있더라도 71세가 되면 RRSP를 구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인이 71세가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71세 이전이라면 배우자 RRSP를 가입하여 RRSP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71세가 되면 RRSP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인출해야 한다. 이때에는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캐나다 세법에서는 71세가 되는 연도에 RRSP를 RRIF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RSP에서 RRIF로 전환하면 매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할 수 있어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RRSP 세제 혜택 적용 사례

RRSP의 이해를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2021년의 본인 총소득이 100,000달러이며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24,700달러 정도이다. 만약 RRSP를 10,000달러를 불입하면 세금은 20,900달러로 감소하여 3,800달러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약 38%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른 예로, 소득이 50,000달러인 경우 세금 납부금액이 8,400달러 정도가 된다. 즉, RRSP에 10,000달러를 불입하면 납세금액이 5,700달러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절세 금액은 2,700달러로 절세율은 약 27%가 된다. 만약, 5,000달러를 구입하였을 때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2%인 납세자는 1,100달러의 절세효과가 나타나며, 43.7%의 최고세율 적용자인 경우에는 2,185달러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7) 예를 들어, 소득이 60,000달러이고 RRSP 적립금이 10,000달러인 경우 과세 대상소득이 50,000달러로 줄어들게 되어 이 경우 소득세를 대략 25% 가량 절감할 수 있다.

48)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어야만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다. 추가적인 비과세 계좌(TFSA)의 활용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의 ISA와 같은 비과세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비과세 계좌인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등록제(Registered) 예금·투자 제도이다. 이 비과세 계좌는 예금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TFSA는 반드시 개인 명의여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1인당 5,000달러까지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RRSP와 달리 중도에 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FSA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SIN카드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이다.⁴⁹⁾ 가입은 정기예금(Term Deposit)과 저축예금(Savings Account) 및 자유적금(Free Installment Deposit)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TFSA는 RRSP와는 달리 가입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인출 시 찾는 금액에 대해 Tax가 발생하지 않으며, TFSA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가 필요 없는 예금이다. 참고로, RRSP와 TFSA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RRSP와 TFSA의 상호 비교

구분	TFSA	RRSP
가입 한도	•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 • 2009년~2012년 : 매년 5,000달러 가입가능 • 2013년~ : 매년 5,500달러 가입 가능	•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가입 한도가 정해짐
세금 공제	• 세금공제 불가 •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TAX FREE (T5발급되지 않음)	• 세금공제 가능 • 가입 금액과 발생이자소득에 대해 인출 시까지 세금이연 혜택
인출	• 인출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인출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세율 적용하여 세금내야 함

IV. 캐나다 RRSP 제도 도입 방안

캐나다에서 개인연금인 RRSP가 활성화된 주된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세제혜택의 부여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의 RRSP와 같은 제도 도입 가능성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49) 9로 시작하는 SIN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1.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기한전까지 개인연금 추가 불입 방안

캐나다 RRSP의 불입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당해연도가 종료되었어도 그 이듬해 3월 1일까지 개인연금의 불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RSP는 매월 또는 매주 불입이 가능하다. 소위 RRSP의 연중 마감은 실제로는 투자가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불입 기간의 마감을 의미한다. 많은 캐나다 납세의무자들은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연초에 RRSP를 추가로 불입한다. RRSP는 연중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2022년 세금 신고에 적용받기 위한 RRSP 구입 기한은 2023년 3월 1일까지이다.

예컨대 2021년도 세금 보고에 적용할 수 있는 RRSP 불입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3월 1일까지다. 그 이후에 불입한 것은 2022년도 세금보고에 활용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불입시기를 연도 말로 국한하여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만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RRSP 사례와 같이 불입기간을 익년도 초까지 연장하여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연금 추가 불입시기를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전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 주고 적립된 금액은 인출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캐나다 개인연금 제도인 RRSP는 당해 연도 종료 이후에 개인연금 불입이 추가로 가능한 새로운 사후 불입 방안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불입 기한과 인출기한의 연장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캐나다 RRSP의 불입 기한은 71세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수령시기가 55세로 국한되어 있다. 캐나다 RRSP는 불입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IRP의 불입 연령의 장기화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시사점이 있다. 캐나다 RRSP 투자는 71세인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 해에는 RRSP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RRIF라고 불리는 등록퇴직소득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RRSP 만기로 인하여 인출하는 금액이나 RRIF로 전환된 금액은 비로소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연금 불입 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연금 인출시점을 늦추어 과세되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RRSP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고 RRIF를 통해 인출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상의 이유 때문이다. 한꺼번에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큰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IRP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 시에도 장기간으로 하여 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RRSP의 IRP 적용 방안

캐나다에서 활용중인 RRSP의 개인연금제도를 우리나라의 IRP제도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캐나다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IRP 추가 불입에 대하여 연도말이 종료되어 그 이듬해 세금 신고 시에 추가 불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개인연금에 불입하여 세 부담도 절감하고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캐나다 RRSP에 불입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데에 있다. 우리나라 IRP도 자신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IRP에 추가 불입을 통해 본인의 세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액 공제가 되는 불입 금액 한도가 7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동 금액은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되는 불입금액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IRP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액을 미리 추산하여 불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납입하고 있다. 18백만원까지는 불입이 가능하나 7백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RP의 추가 불입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어도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IRP 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RRSP는 전년도 근로소득의 18%와 2022년의 경우 최대 29,21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불입하지 않았던 RRSP의 추가 금액도 불입할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IRP 추가 불입액의 한도를 연간 18백만원으로 증가시키고 동일 금액 내에서 전액 불입되지 않았다면 그 이듬해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연금 소득과세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출시점까지 이연하는 방안

캐나다의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RRSP는 본인이 71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전액을 인출하거나 Annuity(연금)를 받던지 RRIF로 전환하여야 한다. 첫째, 방법을 적용할 때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는 RRSP는 인출하는 당해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종합하여 과세하므로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Annuity 즉, 연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71세가 되는 해까지 본인이 불입한 RRSP의 총액을 가지고 일정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하고 RRSP 계좌를 폐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IRP에 추가 불입을 하였다면 동일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연금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연령별로 차등하여 3.3%부터

5.5%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RRSP를 RRIF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IRP에 불입한 금액을 ISA 계좌 등에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비과세 저축(ISA) 등에 이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적용하는 방안

현재 캐나다의 RRSP 추가 불입 금액은 전년도 소득의 18%와 일정한 한도까지 과세이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RP 불입 시 세액공제율이 13.2%로 공제된다. 반면, 총급여가 5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납부할 세율보다 높게 소득금액의 18%와 18백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IRP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RRSP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게 설정하여 공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불입 금액 또한 현행보다는 높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본인의 소득이 6천만원이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납부세액 1천만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 이듬해 2월말까지 개인연금에 1천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55세의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여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된 1천만원을 비로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대신 1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노후 소득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만일 본인의 소득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납부할 세액 중에서 2억원의 18%인 3천 6백만원과 18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18백만원을 추가로 개인연금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불입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 운용이익은 비과세하는 방안

현재 개인연금은 최소한 10년 동안에 걸쳐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인출 시에는 과세를 하는데, 인출시점까지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현재 인출 시에 과세하되 ISA 계좌를 활용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 후 인출 시점에 과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IRP에 캐나다 RRSP를 적용할 경우에도 ISA와 같이 비과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RRSP 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반면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RRSP 불입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인출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라. 본인 이외에 배우자의 IRP 불입 허용

캐나다의 배우자 RRSP와 같이 본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배우자분으로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주로,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IRP에 추가 불입하여 배우자의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연금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IRP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본인의 소득이 6천만원이 있고 배우자의 소득은 없으며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본인이 납부할 세금 1천만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연금에 불입하도록 하며 그 이듬해 2월말까지 IRP 계좌에 1천만원을 불입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 과세 이연된 1천만원을 납부하고 그 대신 1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 당해연도 미 불입분 이월공제 허용

또한, 과거에 구입한 불입하지 않은 한도 금액도 차년도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추가 불입제도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⁵⁰⁾ 따라서, 납세자의 절세와 노후 자금 마련의 두 가지의 필요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세와 노후 자금 마련 전략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바. 중도인출의 경우를 방지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공적연금 우위형 국가⁵¹⁾인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9%(2010년 기준, OECD)로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지급액 축소, 연금수령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

50) 미국에서 1975년에 시작된 연금저축(IRA)에 앞선 1957년도에 소개된 캐나다 은퇴저축은 구입한 금액 전체가 소득에서 공제되며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양도차익, 환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므로 자산증식에 유리하며 인출 시에는 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72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이 아닌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시세차익, 실업급여 등은 제외된다. 구입기한은 소득세 해당년도 다음해 60일 이내(익년도 3월 1일)이며 구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2022년도 기준 최고한도 : 29,210달러)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Unused Limit : NOA에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매입이 가능하다.

51) 공적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40-60%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같은 적극적인 세제혜택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199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불입액의 소득공제,⁵²⁾ 10년의 계약 유지 시 연금수급액 전액 비과세 등의 기본적인 세제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나마 연금저축과 IRP 제도가 있으나 가입율과 가입한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세제적격상품의 경우에는 생활비 활용 등으로 계약 해지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세제비적격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캐나다의 경우를 참조하여 주택 마련비용, 교육비용 등의 필요로 인한 개인연금자산 인출 시에 세제적격 여부, 필수 가입기간 등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전보다 개인연금 가입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퇴 후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인출 한도 설정, 인출 횟수 제한, 인출금액 회수기간 설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RRSP의 최대 효과는 연금을 위한 장기 투자이지만, 투자한 그 해 당장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4. RRSP의 시사점을 통한 IRP의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캐나다의 RRSP는 증권, 펀드, 적금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개인연금이며 캐나다 내에서도 최근 CPP(캐나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세금 신고 시 절세효과 혜택이 부여되는 RRSP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캐나다 RRSP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별개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있는 소득목표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여 소득목표를 설정하고 납입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을 통합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유일하게 연계되는 부분이다. 즉, IRP 추가불입액을 7백만원의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때 연금저축에 4백만원을 불입하였다면 IRP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3백만원이 최대의 한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은 낮은 소득공제 상한 및 납입기간에 대한 제한 등으로 사적연금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분 이월공제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 납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RRSP 미사용 분은 익년도에 한

52)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한 금액이다.

도 분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도 RRS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의 사적연금은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캐나다 연금제도의 하나인 RRSP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과세이연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을 마련하는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적연금을 대신한 사적연금의 하나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의 보장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제도적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입률이 저조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도 캐나다의 RRSP 사례와 같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세제 지원과 제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상호 비교하여 캐나다 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6>은 캐나다의 RRSP와 우리나라 IRP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6> 캐나다 RRSP와 우리나라 IRP의 제도 비교

종류	캐나다 RRSP	우리나라 IRP
연금종류	개인연금	개인연금
명칭	등록연금저축제도	개인형퇴직연금
불입기한	다음연도 2월말	당해연도 12월말
소급불입	미 불입분 추가불입 가능	불가능
부부명의 불입	부부명의 불입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	가능
연금 인출 연령	71세	55세
중도인출 제재	- 중도 인출 시 원천징수(0~5,000달러 : 10%, 5,000달러~15,000달러 : 20%, 15,000달러 이상 : 30%) 71세 이후 인출할 경우 원천과세는 부과되지 않음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불입한도	전년도소득 18%, 일정한도 중 적은 금액	400만원, IRP와 합산하여 700만원
공제종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100%	13.2% 또는 16.5%

〈표 6〉 캐나다 RRSP와 우리나라 IRP의 제도 비교 (계속)

종류	캐나다 RRSP	우리나라 IRP
중도인출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교육비 지급

V. 결 론

캐나다 개인연금인 RRSP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축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연적이다. 그것도 장기간의 세제이연을 통한 세제지원은 필수적이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연금액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크게 활성화되어 모든 개인마다 3층 연금의 하나인 개인연금의 준비가 나름대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RRSP 제도를 통해 확고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 생애를 통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노후 자금 마련은 한시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장기투자와 복리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역 시절에 적은 금액이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제도 이외에 개인연금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3층 구조의 연금제도 중에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의 소득세 절감과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대한의 세제 절감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캐나다 RRSP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의 지원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RRSP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납세

자의 절세와 노후 자금 마련의 두 가지의 필요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RSP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노후 자금 마련이 목표인 RRSP 제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IRP에 사후 불입이나 소급 불입을 허용하거나 배우자 간 불입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준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RRSP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의 하나이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활용하고 있는 RRSP 제도의 검토와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 및 세제지원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RRSP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금제도와 세제의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도와 세제지원책의 보강이 필요하다. 즉, 불입 한도의 증액과 불입 시기의 조절 및 운용단계의 비과세와 인출단계의 과세를 하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도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RRSP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노후 소득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의 RRSP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 제도가 불입 단계에서부터 인출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제혜택과 세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의 폭넓은 세제 혜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병권 · 우석진 · 안종길 · 빈기범. 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 53-79.
- 김수성. 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 공적 · 퇴직 · 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0-1집 : 378-422.
- _____. 이세우. 20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 : 185-218.
- _____. 정영득. 2020. “개인연금 공제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금융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1호 : 1-41.
- 김원섭 · 강성호. 2008.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권 제1호 : 261-292.
- 김원식 · 김우철 · 김상봉 · 김재현. 2016.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 33-58.
- 남궁재. 2017. 『캐나다 세금 이야기』, 좋은땅.
- 심해린 · 전병욱. 2020.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 119-151.
- 오병국. 2011. “캐나다 개인연금(RRSP)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 Weekly.
- 이경희. 2013.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 37-69.
- 이순재 · 김현수. 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3호 : 249-280.
- 임병인 · 강성호. 2005. “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 소득 보장 효과”.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3호 : 89-121.
- 전승훈 · 강성호 · 임병인. 2007.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1호 : 41-72.
- 정요섭. 2003. “신 · 구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 · 세제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 3-22.
- 정원석 · 강성호. 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 113-141.
- _____. 강성호 · 이상우. 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
- 홍원구. 201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정책이슈&정책 12-08.

Tax Support Measures to Revitalize Individual Pensions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Canadian Personal
Pension System (RRSP)

Su Sung Kim* · Won Seok Choi**

〈Abstract〉

In Canada, one of the pension plans, the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RSP”) is actively used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 to ensure abundant retirement income. Canada’s RRSP is one of the tax deferral methods that replaces taxes to be paid with pensions, which greatly contributes to ensuring retirement income. Recently, due to the rapid aging of Korea,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incom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retirement pensions and personal pensions, excluding public pensions, are not very active.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retirement pensions and individual pens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RRSP, one of the Canadian personal pension systems, and suggests a plan to revitalize the Korean Individual Retir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P’). It was intend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RRSP for Korea and to suggest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hrough this.

Currently, Korea provides tax deductions only for the amount paid into personal pensions by the end of the year. However, the RRSP system in Canada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personal pension accounts without paying taxes to be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even if personal pensions are not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It operates a unique pension system that defers one’s taxable income and levies it at the time of actually receiving the pension. This not only reduces the tax burden but also greatly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retirement income, so in Canada, it is becoming an essential personal pension system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personal pension system.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ble post-payment in IRP. If the payment was made due to the payment limit in the previous year, a plan to allow additional payment in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considered. Second, retroactive payments

* Ph.D. of Taxation, Teachers’ Pension, mercury@tp.or.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wschoi@uos.ac.kr, Corresponding Author

should also be made possible in IRP. If payment was not made at all in the previous ye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hat can be pai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year. Third, the person with income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the spou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cases of post-payment, retroactive payment, and additional payment of spouses in Canada as one of the support measures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in Korea.

〈Key words〉 RRSP, Personal pension, Government-provided Pension Plan, Pension, Canadian Pension, Aging Income